

에 부응하고 국제적 시장개방 조류에 대응하여 우리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디어산업 발전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행법 상의 대기업, 신문·뉴스통신 및 외국자본의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 콘텐츠 사업에 대한 경영 또는 주식·지분 소유금지 등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기업, 신문 또는 뉴스통신은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함(법 제8조제3항).

나.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출자 또는 출연을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법 제9조제2항).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09년 7월 31일

국무총리 한승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이달곤
장관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 제9788호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면서 금융회사의 대형화·겸업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전이(轉移),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여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하며 1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회사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회사를 말한다”를 “하는 회사로서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1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할 것

나.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다. 제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을 것

3의2. “증손회사”란 손자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회사(외국 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2조제1항제5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가목 내지 다목”을 “가목 및 다목”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의2, 제6호의3 및 제6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비은행지주회사”란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지배하지 아니하는 금융지주회사를 말한다.

6의3. “보험지주회사”란 「보험업법」 제2조제5호의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를 포함하여 1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비은행지주회사를 말한다.

6의4. “금융투자지주회사”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인 1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금융기관을 지배하지 아니하는 비은행지주회사를 말한다.

가. 보험회사

나. 「상호저축은행법」 제6조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상호저축은행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투자성이 없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불특정다수로부터 자금을 취득하여 그 자금을 운용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

제2조제1항제8호다목 중 “100분의 4”를 “100분의 9”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라 한다)로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

(1)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총액의 100분의 18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유한책임사인 경우(이 경우 지분을 계산할 때 해당 사원 외의 유한책임사원으로서 해당 사원의 특수관계인인 자의 지분

을 포함한다. 이하 제8조의5제1항제1호에서 같다)

(2)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모투자 전문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인 경우. 다만,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한책임사원이 다른 사모투자 전문회사를 통하여 비금융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에 투자함으로써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해당 사원 외의 유한책임사원으로서 해당 사원의 특수관계인인 자를 포함한다)이 그 다른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출자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다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에 속하는 각각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취득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의 합이 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총액의 100분의 36 이상인 경우

다. 라목에 해당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1조제1항제3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이하 “투자목적회사”라 한다)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자 중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투자목적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9를 초과하여 취득·보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의 해당 투자목적회사

제2조제1항제10호나목 중 “자회사와 손자회사(이하”를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제19조의2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된 다른 회사를 포함하며, 이하”로, “행사하고 있는”을 “행사하거나 비금융주력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해당 금융기관의 경영에 관여하는”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제2조제1항제1호의 금융지주회사 요건(같은 호 다목에 따른 인가요건을 제외하며, 이하 “금융지주회사요건”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금융지주회사의 부채를 통한 자회사의 주식 소유 등으로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경영건전성 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가에 경영건전성 등의 개선을 위한 조건을 붙여야 한다.
-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함에 있어서는 관련시장에서

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자회사 및 손자회사(제19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자회사가 지배하는)을 “자회사,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제19조의2, 제32조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된 다른”으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제2조제1항제1호의 금융지주회사 요건(제3조에 따른 인가요건을 제외하며, 이하 “금융지주회사요건”이라 한다)”을 “금융지주회사요건”으로, “자산총액이 제3조제1항의 금액 미만인 자를 제외하며, 이하”를 “이하”로, “사업연도 결산일부터 대통령령으로”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5조의2제2항 중 “사업연도 결산일부터 대통령령으로”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3장에 제6조의3 및 제6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주식소유 제한) 금융지주회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금융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지주회사로 설립될 당시에 비금융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금융지주회사로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제6조의4(금융지주회사의 계열회사 주식소유 제한)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 외의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융지주회사요건에 해당하게 된 당시에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금융지주회사요건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2.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계열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그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 내에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3. 자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당해 자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제7조제1항제2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를 “투자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사업연도 결산일부터 대통령령으로”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제1호의 경우 금융지주회사와 지배관계에 있는 다른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은 제19조 및 제19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 상황 또는 주식보유비율의 변동 상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경우에는 그 사원의 변동이 있을 때

5.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한 투자목적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사원의 변동이 있을 때(해당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사원의 변동이 있을 때를 포함한다)

제8조제5항 중 “제3항의 규정”을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보고의 절차, 방법,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으로, “관련한 승인의 요건·절차”를 “관련된 승인의 요건·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81조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을 “제81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100분의 4(지방은행지주회사의)”를 “100분의 9(지방은행지주회사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금융주력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2항 및 제8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한다.

1. 2년 이내에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자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이하 “전환계획”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비금융주력자

2.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또는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법률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기금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보유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비금융주력자

가.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기금등과 은행지주회사등의 다른 주주, 예금자 등 이해관계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계를 갖출 것

나. 가목에 따른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범위에서 감독 및 검사를 받을 것

다. 그 밖에 기금등의 주식보유가 은행지주회사등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제8조의2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계획의 승인요건 그 밖

에”를 “제3항제1호에 따른 전환계획의 승인요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승인의 절차·방법 및 그 밖에”로 한다.

제8조의3제1항 중 “제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51조의2제1항제1호나목의 사유에 의한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장의 검사결과 은행지주회사등과의 불법거래 사실이 확인된 전환대상자

제8조의4부터 제8조의7까지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4(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① 비금융주력자가 해당 은행지주회사(지방은행지주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5에서 같다)의 최대주주가 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해당 은행지주회사등의 경영에 관여하는 경우로서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 해당 은행지주회사 주

주의 보유지분의 분포·구성내역 등을 고려하여 해당 비금융주력자가 은행지주회사등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경영관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비금융주력자가 은행지주회사의 다른 주주의 주식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비금융주력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는 조치
2. 보유주식의 처분 등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3.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 부문의 자본비중 감소 등 비금융주력자가 아니게 되도록 하는 조치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비금융주력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비금융주력자의 자격, 주식보유와 관련된 승인의 요건·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비금융주력자와 은행지주회사등의 다른 주주, 예금자 등 이해관계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3항을 적용할 때 보고의 절차·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⑧ 비금융주력자가 제4항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비금융주력자는 해당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이하 이 조에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여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지체 없이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 금융위원회는 제8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8조의5(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이라 한다)가 해당 은행지주회사의 최대주주가 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의 임면 등의 방

법으로 해당 은행지주회사등의 경영에 관여하는 경우로서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2조제1항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유한책임사원인 경우의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
2. 다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각각의 계열회사가 보유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의 합이 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투자목적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취득·보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의 해당 투자목적회사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제8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으려는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요건가. 법인으로서 자신이 업무집행사원으로 있거나 그 재산운용을 위탁받은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다른 사원 또는 주주의 특수관계

인이 아닐 것

나. 자신이 업무집행사원으로 있거나 그 재산운용을 위탁받은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다른 사원 또는 주주가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재산인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자산운용 능력·경험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2. 그 밖에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주식보유가 해당 은행지주회사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위한 심사를 할 때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등 또는 그 재산운용 등을 담당하는 업무집행사원에게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정관, 그 밖에 그 주주 또는 사원 사이에 체결된 계약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⑤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이 은행지주회사의 다른 주주의 주식처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제8조

의4제3항·제4항·제8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 해당 은행지주회사 주주의 보유지분의 분포·구성내역,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사원 또는 주주의 구성내역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이 은행지주회사등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경영관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절차·심사방법, 제2항의 요건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6(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보고사항) 제8조제3항 또는 제8조의5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이 제8조의5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정보 또는 자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7(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의무) 사모투자전문회사등 또는 그 주주·사원은 제8조제3항 또는 제8조의5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또는 투자목적회사로부터 재산

운용을 위탁받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 외의 자가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이 보유한 은행지주회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2. 비금융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에 투자함으로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투자에 해당하게 되는 행위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4. 주주 또는 사원 사이에 이 법 또는 다른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9조(외국은행등에 대한 특례) ① 금융위원회는 외국에서 은행업을 주로 수행하는 회사 또는 해당 법인의 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외국은행등”이라 한다)를 포함하는 동일인이 제2조제1항제8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외국은행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해당 외국은행등이 신청한 경우에는 같은 항 제7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외국은행등이 직접적·간접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하는 외국법인으로서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단체나 조합 등을 포함한다)을 동일인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외국법인이 해당 외국은행등이 주식을 보유하는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직접적·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산총액, 영업규모 등에 비추어 국제적 영업활동에 적합하고 국제적 신인도가 높을 것

2. 해당 외국의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해당 외국은행등의 건전성 등과 관련된 감독을 충분히 받을 것

3. 금융위원회가 해당 외국의 금융감독당국과 정보교환 등 업무협조 관계에 있을 것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건의 세부기준 및 해당 외국은행등의 신청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 중 “주식을”을 “주식을 보유하거나 제8조의4제1항 또는 제8조의5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은행지주회사(지방은행지주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로, “당해 한도”를 “제8조제1항·제3항 또는 제8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한도 및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이하 이 조 및 제10조의2에서 “한도등”이라 한다)”로, “한도에”를 “한도등에”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한도를”을 “한도등을”로 한다.

제10조의2의 제목 중 “한도초과보유주주”를 “한도초과보유주주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8조제3항 및 제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조제3항, 제8조의2제3항, 제8조의4제1항 및 제8조의5제1항에 따라”로, ““한도초과보유주주”라”를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라”로,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제8조제5항, 제8조의4제6항 및 제8조의5제2항에 따른”으로, “초과보유요건”을 “초과보유요건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도초과보유주주”를 “한도초과보유주주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한도초과보유주주가 초과보유요건”을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초과보유요건등”으로, “초과보유요건을 충족하도록”을 “초과보유요건등을 충족하도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등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제8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동일인: 제8조제3항제1호에서 정한 한도
2. 제8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금융주력자: 제8조의2제1항에서 정한 한도
3. 제8조의4제1항 또는 제8조의5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비금융주

력자 또는 사모투자전문회사등: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

제10조의2제5항 중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당해”를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해당”으로, “한도초과보유주주가 제8조제3항제1호에서 정한 한도”를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등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초과보유요건등의 충족 여부를 심사할 때 제8조의2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13조 중 “은행법 제1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를 “「은행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자회사를 편입하거나 자회사가 새로이 손자회사를”을 “자회사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금융지주회사의 부채를 통한 자회사의 주식소유 등으로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경영건전성 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승인에 경영건전성 등의 개선을 위한 조건을 붙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자회사등을 편입하는 경우에는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자회사”를 “자회사등이”로 한다.

이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의 제목 (“손자회사”)를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다른 회사를 지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국에서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
2. 손자회사가 될 당시에 지배하고 있던 회사의 경우로서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3.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되어 지배하게 된 경우로서 해당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제19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금융지주회사의 증손회사는 다른 회사를 지배하여서는 아니 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손회사가 될 당시에 지배하고 있던 회사인 경우로서 증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2.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되어 지배하게 된 경우로서 해당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 ④ 제3항은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된 자회사등이 제3항 이하의 단계로 수직적으로 출자하여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4장에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금융투자업자인 손자회사·증손회사 등의 다른 회사 지배)

①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금융투자업자의 지배를 받는 손자회사가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배하는 외국 증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1. 그 다른 회사가 외국에서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일 것
2. 제4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소유기준 이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외국 증손회사의 지배를 받는 외국 금융투자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금융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1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 1. 그 다른 회사가 외국에서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일 것
 - 2. 제4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소유기준 이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것
- ③ 제2항은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된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제2항 이하의 단계로 수직적으로 출자하여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5장(제20조부터 제37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제1절 비금융회사 지배 등

제20조(비금융회사 지배의 특례) ① 비은행지주회사는 제6조의3에도 불구하고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지배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은행지주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2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 전단의 경우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비은행지주회사 규정의 적용 등) ① 비은행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회사와 그 자회사등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이 조에서 “비은행지주회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2조제2항 각 호에 열거된 규정(그 중 제15조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외에 이 법을 계속 적용한다.

- 1. 금융지주회사요건 중 주된 사업 기준에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2. 비은행지주회사등 중 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해당 비은행지주회사등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6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어 제2항 본문의 적용을 받는 회사에 대하여 3년의 범위 내에서 금융지주

회사요건에 해당하도록 하거나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보고, 제3항에 따른 조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 제출자에 대한 특례)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비은행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전환계획”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전환계획의 이행시까지 그 전환계획에서 비은행지주회사와 자회사등으로 예정한 회사들(이하 이 조에서 “전환대상자”라 한다)을 이 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환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당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이하 이 조에서 “행위제한규정”이라 한다)의 내용과 달리 법률관계가 형성된 경우에도 그 승인시로부터 5년의 범위 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승인할 당시에 인정한 기간 이내에는 해당 전환대상자에 대하여 행위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가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경제여건의 변화, 사업의 현저한 손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전환

대상자가 주식을 취득·처분하거나 자산을 매각하는 것 등이 곤란한 경우에 금융위원회는 2년의 범위 내에서 행위제한규정의 유예기간을 각각 연장할 수 있다.

1. 제5조의2제2항
2. 제6조의3
3. 제7조
4. 제15조
5. 제19조
6. 제20조제1항 후단, 제25조제2항 후단, 제25조제3항 후단, 제26조제3항 후단 또는 제27조제1항(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각각 포함한다)
7. 제31조제1항 후단, 제31조제2항 후단 또는 제32조제2항 후단
8. 제43조의2
9. 제43조의3
10. 제44조
11. 제48조제1항제2호
12. 제48조제5항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전환계획을 승인함에 있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저해할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1. 제3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직원 겸직
- 2. 제47조제1항에 따른 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 3. 제48조제4항에 따른 공동광고, 전산시스템 등 시설의 공동사용
- 4. 제4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제공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연장을 함에 있어서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전환계획에 대한 전문기관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⑥ 금융위원회는 전환대상자의 전환계획 이행상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⑦ 금융위원회는 제6항의 점검결과 전환대상자가 전환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 내용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환대상자는 행위제한규정(제43조의2 및 제43조의3을 제외한다)의 내용과 달리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1. 금융위원회로부터 제7항의 이행명령을 받은 전환대상자
- 2.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의 검사결과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 간 또는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등 간 불법거래 사실이 확인된 전환대상자

⑨ 금융위원회는 전환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행위제한규정의 내용과 달리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1. 제7항의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⑩ 제1항의 승인, 제2항 단서의 기간연장, 제7항의 이행명령 및 제9항의 처분명령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보험지주회사에 관한 특칙

제23조(설립인가) 제3조의 인가를 받아 보험지주회사가 되려는 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의 인가기준 중 보험계약자 보호와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24조(자회사등의 편입승인 등) ① 보험지주회사가 새로이 자회사등을 편입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의 승인요건 중 보험계약자 보호와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비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등으로 편입하는 경우 제1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 등) ①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보험회사는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1. 비금융회사(「보험업법」 제11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소유하는 회사를 제외한다)
2. 제2조제1항제5호가목 및 다목의 금융기관(이하 이 장에서 “은행등”이라 한다)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회사
 - 가. 자회사인 보험회사가 생명보험업의 보험종목 전부를 영위하는 경우: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전부를 영위하는 보험회사
 - 나. 자회사인 보험회사가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전부를 영위하는

경우: 생명보험업의 보험종목 전부를 영위하는 보험회사

②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금융회사[제2조제1항제6호의4 각 목의 금융기관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이 장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라 한다)를 제외한다]는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이 경우 비금융회사를 지배하는 때에는 해당 금융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은행등
2. 제2조제1항제6호의4 각 목의 금융기관
- ③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비금융회사는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및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금융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손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의 특례) ①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보험회사의 지배를 받는 손자회사는 다른 국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1. 비금융회사

2. 은행등

②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금융회사(제2조제1항제6호의4 각 목의 금융기관 및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제외한다)의 지배를 받는 손자회사는 다른 국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2항 각 호의 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③ 보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비금융회사는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및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금융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특례 등) ①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등으로서 제2조제1항제6호의4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은 다른 금융관련법령에도 불구하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될 수 없다.

②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금융기관이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비금융회사를 지배하는 경우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8조(상호저축은행 등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보험회사를 지배하지 아니하면서 제2조제1항제6호의4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또는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지배하는 비은행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등에 대하여는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절 금융투자지주회사에 관한 특칙

제29조(설립인가) 제3조의 인가를 받아 금융투자지주회사가 되려는 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의 인가기준 중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의 방지, 금융투자업자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30조(자회사등의 편입승인 등) ① 금융투자지주회사가 새로이 자회사등을 편입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의 승인요건 중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의 방지, 금융투자업자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금융투자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비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등으로 편입하는 경우 제1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1조(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 등) ① 금융투자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금융투자업자는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2항 각 호의 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이 경우 비금융회사를 지배하는 때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금융투자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비금융회사는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금융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손자회사·증손회사 등의 다른 회사 지배의 특례) ① 금융투자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인 금융투자업자의 지배를 받는 손자회사·증손회사(비금융회사를 제외한다)는 각각 제19조제2항·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2항 각 호의 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② 금융투자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비금융회사는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금융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지주회사의 증손회사의 지배를 받는 금융투자업자는 제1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1. 제25조제2항 각 호의 회사 및 비금융회사를 지배하지 아니할 것
2. 해당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할 것

④ 제3항은 금융투자지주회사에 편입된 금융투자업자가 제3항 이하의 단계로 수직적으로 출자하여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33조(비금융회사 지배에 관한 다른 법률과의 관계) 금융투자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금융기관이 제31조 또는 제32조에 따라 비금융회사를 지배하는 경우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절 대주주·자회사등 간의 거래제한 등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① 비은행지주회사 및 그 자회

사등(이하 “비은행지주회사등”이라 한다)은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밖에 비은행지주회사등의 건전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해당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를 지원하기 위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비은행지주회사등(다른 비은행지주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이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같다)이 그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비은행지주회사등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비은행지주회사등이 제45조제1항 단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비은행지주회사등은 해당 비은행지주회사등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그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을 취득(신탁업무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단에 따른 취득한도 이내에서 주식의 종류별로 취득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새로 대주주가 됨에 따라 비은행지주회사등이 제3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해당 비은행지주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한도를 초과한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⑤ 비은행지주회사등은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거나 해당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 결의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⑥ 비은행지주회사등은 해당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신용공여
2. 해당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취득하는 행위
3. 해당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⑦ 비은행지주회사등은 해당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

공여 또는 해당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⑧ 비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보험회사가 해당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회사가 그 거래일로부터 30일 이전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⑨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는 해당 비은행지주회사등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해당 비은행지주회사등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제42조제4항·제5항(「상법」 제466조에 따른 권리의 행사에 한한다) 및 「상법」 제466조에 따른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해당 비은행지주회사등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⑩ 금융위원회는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회사에 한한다)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채무상환능력이 현저히 약화되는 등 재무구조의 부실로 인하여 비은행지주회사등의 경영건전성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은행지주회사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대주주에 대한 신규 신용공여의 금지
- 2.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규 취득 금지
- 3. 그 밖에 대주주에 대한 자금지원 성격의 거래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⑪ 금융위원회는 비은행지주회사등 또는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가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비은행지주회사등 또는 대주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5조(비은행지주회사의 부채비율) 비은행지주회사는 자본총액(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총액을 보유할 수 없다. 다만, 비

은행지주회사로 설립될 당시에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총액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비은행지주회사로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총액을 보유할 수 있다.

제36조(신용공여한도 및 자회사등의 행위제한에 대한 특칙) ① 비은행지주회사등(다른 비은행지주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동일차주(「보험업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동일차주를 말한다) 및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제45조에도 불구하고 비은행지주회사등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비은행지주회사등이 제45조제1항 단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비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에 대하여는 제48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비은행지주회사등은 대주주 또는 다른 자회사등과 거래를 함에 있어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그 외의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하는 경우 등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비교하여 해당 비은행지주회사에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을 매매 또는 교환하거나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비금융회사에 대한 감사의 특례) ① 금융감독원장은 비은행지

주회사등의 건전한 자산운용,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비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비금융회사의 사무소, 그 밖의 시설에 방문하여 비은행지주회사등의 업무 또는 재산의 상황에 관하여 질문,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하거나 해당 비금융회사의 장부, 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의 구체적 범위·방법,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5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감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9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2항 중 “임원”을 각각 “임직원”으로 한다.

제3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기관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임직원은 다른 자회사등의 임직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
2. 「보험업법」에서 정하는 변액보험계약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④ 금융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등의 임직원이 제2항 및 제3항 본문에 따라 다른 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41조의 5의 내부통제기준의 적절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이해상충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저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겸직하는 회사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
 2. 겸직하는 업무의 처리에 대한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해상충 방지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 단서에 따른 보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의 겸직을 제한하거나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
 2. 고객과의 이해상충을 초래하는 경우

3.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4.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 ⑥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임직원을 겸직하게 한 금융지주회사와 해당 자회사등은 금융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임직원 겸직으로 인한 이해상충 행위로 고객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융지주회사와 해당 자회사등이 제41조의5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임직원의 겸직으로 인한 이해상충의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그 손해가 있을 경우
 2. 고객이 거래 당시에 임직원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 행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이에 동의한 경우
 3. 그 밖에 금융지주회사와 해당 자회사등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⑦ 제4항에 따른 승인·보고의 대상이 되는 임직원의 범위, 승인·보고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0조제4항제8호 중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계열회사”로 한다.

제41조의4제2항 후단 중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2를”을 “「상법」 제542조의10을”로 한다.

제4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5(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① 금융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을 준수하고 위험관리를 통하여 금융기관인 자회사등의 건전성을 유지하며 이해상충을 방지하는 등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정하여야 한다.

- 1. 제39조제2항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 2. 제47조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 사이에 업무위탁을 하는 경우
 - 3. 그 밖에 법령의 준수, 위험 관리 및 이해상충의 방지 등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② 제1항의 경우 금융지주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에 위반하는 때에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자(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를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 ③ 금융지주회사는 준법감시인을 임면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 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④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이어야 하며, 준법감시인이 된 후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일 것. 다만,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라목에서 규정한 기관에서 퇴임 또는 퇴직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이 되지 못한다.

가. 한국은행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금융관계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합산하여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관련 기관에서 합산하여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최근 5년간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주의·경고의 요구 등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⑤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금융지주회사는 준법감시인이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금융지주회사는 준법감시인을 임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의 임직원은 준법감시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⑨ 금융지주회사는 준법감시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⑩ 그 밖에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대주주 기준에 관한 특례) 금융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회사등에 대하여 해당 금융관련법령에 따른 설립 인가·허가 또는 주식취득에 의한 대주주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대주주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제3조의 인가를 받아 지배하게 된 자회사등
2. 제16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편입한 자회사등
3. 제18조에 따른 신고대상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등

제43조를 삭제한다.

제43조의2제1항 중 “금융지주회사는”을 “금융지주회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인”을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 또는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당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2인 이상의 출자자가 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출자지분의 양도를 현저히 제한하고 있어 출자자간 지분변동이 어려운 법인(이하 이 조에서 “공동출자법인”이라 한다)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을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을 “제1항의 공동출자법인의 세부기준, 제2항”으로 한다.

제4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3(손자회사주식의 소유의무) 제43조의2(제1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및 손자회사가 증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44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해당 주식의 소유가 제6조의4에 따라 금지되는 계열회사 주식 소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제4항 본문 중 “제1항·제2항”을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항 본문”으로 한다.

제45조의2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은행지주회사등은 해당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의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를 지원하기 위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은행지주회사등은 해당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해당 은행지주회사등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 또는 교환을 하거나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의4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42조제4항·제5항(「상법」 제466조에 따른 권리의 행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상법」 제466조에 따른 권리의 행사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45조의4에 제3호의2부터 제3호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6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3의2. 제45조의2제1항·제2항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등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는 행위

3의3. 은행지주회사등으로 하여금 제45조의2제3항을 위반하게 하여 다른 은행지주회사등 또는 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는 행위

3의4. 은행지주회사등으로 하여금 제45조의2제8항을 위반하게 하여 신용공여를 받는 행위

3의5. 은행지주회사등으로 하여금 제45조의2제9항을 위반하게 하여 주요출자자에게 자산의 무상양도·매매·교환 또는 신용공여를 하게 하는 행위

3의6. 제45조의3제1항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등으로 하여금 주요출자자의 주식을 소유하게 하는 행위

제45조의5제2항 중 “은행지주회사등에 대하여”를 “은행지주회사등 또

는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은행지주회사등에 대하여는”으로 한다.

제46조를 삭제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①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금융업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관하여 그 자회사등이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다른 자회사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자회사등 사이의 위험의 전이, 고객과의 이해상충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금융지주회사는 제1항 본문에 따라 그 자회사등 사이에 업무위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제41조의5의 내부통제기준의 적절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위험전이, 이해상충 또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저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2. 수탁자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3. 위탁하는 업무의 처리에 대한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회사등 사이의 위험의 전이 방지, 고객과의 이해상충 방지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른 보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위탁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
2. 고객과의 이해상충을 초래하는 경우
3.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4.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④ 제1항 본문에 따라 위탁받는 업무가 본질적 업무(해당 금융기관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가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그 본질적 업무를 위탁받는 자회사등은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업무를 위탁받는 자회사등이 외국 자회사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⑤ 「민법」 제756조는 제1항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회사등이 그 위탁받은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고객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지주회사와 업무를 위탁한 자회사등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⑥ 제1항 본문에 따른 업무위탁의 기준·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승인·보고의 대상이 되는 자회사등의 범위, 승인·보고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 해당 자회사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등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가. 해당 자회사등에 의하여 직접 지배받는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나. 다른 자회사등이 지배하는 외국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위험전이 방지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외국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③ 은행, 보험회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등은 해당 자회사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등(이하 “금융지주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불량자산을 매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 간 또는 자회사등 상호간에 불량자산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외의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하는 경우 등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비교하여 해당 금융지주회사 또는 자회사등에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해당 불량자산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회사등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거래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금융지주회사등은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공동광고를 하거나 전산시스템, 사무공간, 영업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공동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8조제7항 중 “다른 자회사등(해당 자회사등으로부터 직접 지배받는 회사를 제외한다)”을 “다른 자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의2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신용정보관리인”을 “고객정보관리인”으로, “개인신용정보등”을 “고객정보”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개인신용정보등”을 “고객정보”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① 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3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이하 “개인신용정보”라 한다)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증권을 매매하거나 매매하고자 하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증권총액정보등”이라 한다)를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 1. 예탁한 금전의 총액
- 2. 예탁한 증권의 총액

3. 예탁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회사등이 금융거래정보·개인신용정보 및 증권총액정보등(이하 “고객정보”라 한다)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지주회사등은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그 임원 중에 1인 이상을 고객정보를 관리할 자(이하 “고객정보관리인”이라 한다)로 선임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용을 받는 금융지주회사등 및 자회사등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3제2항 중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를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금융지주회사의 대주주·주요출자자 또는 해당 대주주·주요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에게”로 한다.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건전경영의 지도) ① 금융지주회사는 자기자본을 충실히 하고 부채와 현금흐름 등을 적절히 관리하며, 자회사등에 대한 경영관리

를 통하여 금융지주회사등 전체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금융지주회사는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재무상태에 관한 사항
2.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경영관리상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가 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자회사 주식의 처분 등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1조제1항 중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규정에”를 “금융위원회의 규정·명령 및 지시”로 한다.

제51조의2의 제목“(전환대상자에 대한 검사)”를“(주요출자자등에 대한 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요출자자등”이라 한다)가 각각 해당 호 각 목의 어느 하나”로, “전환대상자”를 “해당

주요출자자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전환대상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전환대상자가 차입금의 급격한 증가, 거액의 손실발생 등 재무상황의 부실화로 인하여 은행지주회사등과 불법적인 거래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8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승인을 받은 비금융주력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8조의2제3항제2호가목 및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해당 비금융주력자가 지배하는 비금융회사의 차입금의 급격한 증가 등 재무상황 부실로 인하여 은행지주회사등과 불법적인 거래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 및 그 주요출자자가 되려는 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8조제3항, 제8조의4제1항 및 제8조의5제1항에 따른 승인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제45조의4를 위반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52조를 삭제한다.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등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자회사등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법령 또는 그 법령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게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3(사모투자전문회사등에 대한 제재 등) ① 사모투자전문회사등(제8조제3항, 제8조의4제1항 또는 제8조의5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사모투자전문회사등만을 말한다. 이하 제4항까지에서 같다) 또는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주주·사원이 제8조의7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은 초과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초과보유한 주식은 지체 없이 처분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이 제1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초과보유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이 제8조의7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당 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3. 기관경고
4. 기관주의
5. 그 밖에 해당 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④ 금융위원회는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재산운용 등을 담당하는 업무집행사원이 제8조의7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그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 가. 해임요구
 - 나.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 다. 기관경고
 - 라. 기관주의

다. 그 밖에 해당 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2. 그 업무집행사원의 임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가. 해임요구

나.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다. 문책경고

라. 주의적 경고

마. 그 밖에 해당 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3. 그 업무집행사원의 직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의 요구

가. 면직

나. 6개월 이내의 정직

다. 감봉

라. 견책

마. 주의

바. 그 밖에 해당 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등(그 주주 또는 사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제4항제2호를 준용한다.

1. 제8조제1항·제3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지주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2. 제8조의4제1항·제8조의5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3. 제10조의2제5항에 따라 주식처분 명령을 받은 경우

⑥ 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등에 대하여는 제10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2조제1항 중 “상법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2조의2제1항제2호 중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60조의4제1항, 제360조의5제2항, 제360조의9제2항, 제360조의10제4항, 제360조의17제1항 및 제363조제1항중”을 “제36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0조의5제2항, 제360조의9제2항 본문, 제360조의10제4항, 제360조의1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63조제1항 본문 중”으로, “동법 제360조의5제1항 및 제360조의5제2항중”을 “같은 법 제360조의5제1항·제2항 중”으로, “동법 제360조의8제1항중”을 “같은 법 제360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상법」 제374조의2제2항”을 “같은 법 제374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6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3조 내지”를 “제6조의3, 제6조의4, 제34조, 제36조, 제44조,”로, “제45조의3, 제46조, 제48조”를 “제45조의3, 제48조”로, “제62조의2제1항의 규정을”을 “제62조의2제1항을 위반하거나 주요출자자가 제45조의4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45조제1항”을 “제36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40”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40”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의2부터 제5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1. 제6조의3 또는 제6조의4를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한 경우: 위반하

여 소유하는 주식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

1의2.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20 이하

1의3. 제34조제3항에 따른 주식취득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20 이하

4의2. 제45조의2제8항 또는 제9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하거나 자산을 무상양도·매매·교환한 경우: 해당 신용공여액 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40 이하

5의2. 주요출자자가 제45조의4를 위반함으로써 은행지주회사등이 제4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여 해당 주요출자자에게 신용공여를 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40 이하

5의3. 주요출자자가 제45조의4를 위반함으로써 은행지주회사등이 제45조의2제8항 또는 제9항을 위반하여 해당 주요출자자에게 신용공여하거나 자산을 무상양도·매매·교환한 경우: 해당 신용공여액 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40 이하

5의4. 주요출자자가 제45조의4를 위반함으로써 은행지주회사등이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주식취득한도를 초과하여 해당 주요출자자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초과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40 이하

제69조의2제1항 중 “제7조의2제2항·제8조의3제5항·제10조제2항·제10조의2제5항·제18조제3항”을 “제7조의2제2항·제8조의3제5항·제8조의4제9항(제8조의5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0조제2항·제10조의2제5항·제18조제3항·제22조제9항·제57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7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자
2.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자
3. 제34조제9항을 위반한 자
4.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무상양도를 한 자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무상양도를 받은 자 또는 자산을 매매·교환한 당사자
5. 제4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항·제9항을 위반하여 주요 출자자에게 신용공여·무상양도를 한 자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무

상양도를 받은 주요출자자 또는 자산을 매매·교환한 당사자

6. 제4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주요출자자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자

7. 제45조의4를 위반한 자

8. 제48조의3제2항을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금융지주회사요건에 해당되는 자로서 제3조, 제5조의2제2항 본문 또는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금융지주회사요건을 해소하지 아니한 자
2. 제48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3. 금융지주회사등의 임직원으로서 업무상 알게 된 고객정보를 해당 금융지주회사등 외의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고객정보를 영업상의 목적 외로 이용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지주회사와 지배관계에 있거나 금융지주회사와 지배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자

2. 제35조를 위반하여 부채총액을 보유한 자
 3.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4. 제43조의2제1항 또는 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주식소유기준 또는 금융위원회가 완화하여 정한 소유기준 미만으로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자(이 경우 제43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각각 포함한다)
 5. 제44조를 위반하여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한 자
 6. 제45조를 위반하여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를 위반한 자
 2. 제16조를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회사등을 편입한 자
 3. 제19조를 위반하여 다른 회사를 지배하거나 제19조의2, 제25조제1항·제2항·제3항 전단(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각각 포함한다), 제26조제1항·제2항·제3항 전단(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각각 포함한다), 제31조제1항·제2항 전단, 제32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3항(제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다)에서 지배할 수 있는 회사로 정하지 아니한 다른 회사를 지배한 자
4. 제6조의3, 제6조의4, 제20조제1항 후단,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조 제3항 후단(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6조제3항 후단(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및 제32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27조제1항(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된 자
 6. 제47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업무위탁을 한 자
 7. 제48조를 위반한 자
 8. 제60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산 또는 합병을 한 자
- ⑤ 제18조·제24조제2항(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회사등을 편입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7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7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2조제1항제1호 중 “제8조제2항”을 “제8조제2항·제8조의4제3항(제8조의5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조의6”으로, “제6조의2제1항”을 “제6조의2제1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2부터 제3호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8조의5제3항(제8조제3항에 따른 승인의 심사를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10조의2제2항, 제34조제11항 또는 제45조의5제1항·제2항에 따른 자료제공 등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 3의2. 제37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3의3. 제41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자
- 3의4. 제4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을 두지 아니한 자
- 3의5. 제41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준법감시인을 임명한 자

3의6. 제41조의5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회사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게 한 자

4. 제34조제5항, 제45조의2제4항 또는 제45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금융지주회사등

5. 제34조제6항·제7항, 제45조의2제5항·제6항 또는 제45조의3제4항·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금융지주회사등

5의2. 제34조제8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72조제2항제5호 중 “검사”를 “검사(제37조 또는 제51조의2에 따른 검사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임직원이”를 “임직원으로서”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위반한 자”를 “위반한 자(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정규정은 각각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1항제8호·제10호,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0조의2, 제45조의2제8항·제9항, 제45조의4, 제45조의5제2항, 제48조의3제2항, 제51조의2 및 제57조의3의 개정규정(제64조, 제69조의2,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의 개정규정 중 괄호 외에서 열거한 개정규정의 위반행위를 요건으로 하는 부분을 포함한다): 2009년 10월 10일

2. 제39조, 제41조의5, 제43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제64조, 제69조의2,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의 개정규정 중 괄호 외에서 열거한 개정규정의 위반행위를 요건으로 하는 부분을 포함한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제2조(임직원 겸직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 사이 또는 자회사등과 다른 자회사등 사이에 임직원 겸직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업무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회사등 사이에 업무위탁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비금융주력자는 제8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8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제5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이유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대한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규제를 완화하여 국내 은행지주회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비은행지주회사(은행을 자회사로 지배하지 않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비금융회사 지배를 허용하는 등 비은행지주회사 관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금융투자업·보험업 중심의 글로벌 금융그룹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금융 자회사 사이의 임직원 겸직의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우리 금융산업의 대형화·겸업화를 촉진하면서, 위와 같은 규제완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방지하는 등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회사 사이의 위험전이(危險轉移)의 차단 등을 위한 금융감독과 시장규율을 강화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판단기준 완화 등 (법 제2조제1항 및 제9조 등)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국제적 신인도가 높고 본국의 충분한 금융감독을 받는 해외 은행 또는 그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비금융주력자 판단기준을 완화함.

2) 비금융주력자 판단기준 완화대상인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4퍼센트 초과 보유하고 최대주주 등이 되고자 하는 경우 사전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함.

나. 공적 연기금의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규제 완화 등(법 제8조의2제3항)

1) 법에 따라 설치된 공적 연기금이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해당 공적 연기금 및 그 관리주체 등과 은행지주회사의 다른 주주 등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규제를 완화하여 적용함.

2) 해당 공적 연기금에 대하여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금융감독당국 등의 검사 및 감독 등을 받도록 함.

다.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제한 완화(법 제8조의2 및 제8조의4 등)

1)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한도를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에서 100분의 10으로 조정하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는 못하도록 함.

2) 비금융주력자가 은행지주회사의 주요 출자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사전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함.

라. 비금융회사 지배 허용(법 제20조, 제25조, 제31조 및 제33조 신설)

1) 금융지주회사는 비금융회사를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형태로 지배하는 것이 금지되는바, 금융과 산업의 결합에 따른 금융업별 시스템 리스크의 차이, 미국(美國)·일본(日本)의 해외 입법례 등을 감안할 때 은행을 자회사로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이하 “은행지주회사”) 수준에 맞추어져 있는 현행 비은행지주회사 규제는 과도한 측면이 있음.

2) 보험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지주회사가 직접 자회사로 비금융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허용하고, 금융투자지주회사에 대해서

는 직접 비금융 자회사를 지배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금융투자
업을 영위하는 자회사가 비금융 손자회사를 지배하는 것도
허용함.

마. 비은행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유예기간(법 제22조 신설)

1) 현행법상 금융지주회사 요건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해서 인가
를 받아 출자규제를 따르도록 함에 있어 부여되는 유예기간
은 금융-비금융 사이의 복잡한 출자관계로 얽혀 있는 대기업
집단의 소유구조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부여
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금융지주회사 규제회피 현상을 야기
하는 측면이 있음.

2) 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을 금융위에 제출한 기업집단에 대
해 계열사 간에 기존에 형성한 법률관계에 대한 출자규제 등
행위제한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최장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
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위 기간을 최
장 2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바.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 방지장치 마련(법 제34조, 제35조, 제
36조제3항 및 제37조 신설)

1)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배 허용 등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금융 자회사를 포함한 금융그룹 전체의 건전성과 금융

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금융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비은행지주회사가 비금융 자회사 등에 대하여 신용공여하는
경우 비은행지주회사에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지원하는 것
을 제한하고, 금융감독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금융 자회사 등에 대하여 임점검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와 회사와의
신용공여,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 등 거래를 제한하여 규제완
화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함.

사. 금융 자회사 등 사이의 임직원 겸직 허용범위 확대(법 제39
조)

1) 개별 금융업법과 달리 이 법에서는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등 사이의 임직원 겸직을 전
면 허용하고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서로 다른 자회사 등
사이의 임직원 겸직도 허용하고 있으나, 금융지주회사의 자회
사에 대한 전반적인 통할 기능, 미국·일본 등 해외 입법례
등을 감안할 때, 이종(異種) 업종을 영위하는 금융 자회사 등
사이의 임직원 겸직을 허용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의 시너지
효과를 증대할 필요성이 큼.

2)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신탁업 등을 제외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회사 등 사이의 임직원 겸직을 허용하면서, 금융지주회사 자체의 내부통제장치 강화, 금융감독당국의 사전승인시 내부통제장치의 적절성 심사, 사법절차상 금융소비자의 금융지주회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시 입증책임의 완화 등을 통해 임직원 겸직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함.

아. 은행지주회사 주요출자자에 대한 감독 강화(법 제51조의2, 제64조 및 제70조 등)

1) 금융감독당국 등이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요출자자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함.

2) 주요출자자 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요출자자 등의 위법행위시 적용되는 과징금 및 벌칙을 강화함.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09년 7월 31일

국무총리 한승수

국무위원
통일부장관 현인택

●**대통령령 제21658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의2(세대의 단위) 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보호 및 정착지원을 하는 세대의 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부(사실상 혼인관계인 부부 및 배우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부부를